

# 외화편뱅킹 서비스 계약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(이하 “갑”이라 함)과 \_\_\_\_\_ (이하 “을” 이라 함)은(는) 다음과 같이 외화편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 장 기본사항

### 제 1조 (목적)

본 계약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외화편뱅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제공서비스의 종류, 대상계좌의 지정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1. “갑”에 개설된 “을”의 외화계좌간 또는 “을”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실시간 또는 대량이체 업무
  2. “을”이 요청하는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개설 및 해지 업무
  3. “을”이 요청하는 외화 국내이체 / 국외송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전송업무
  4. “을”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를 일괄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와 잔액조회 및 환율정보 조회 업무
  5. “을”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 또는 마감잔액을 해외 지정은행 앞 전송하는 업무
  6. “을”이 요청하는 계좌의 성명 조회 업무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외화편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“을”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외화자금의 인출을 위한 예금계좌(이하 “출금계좌”라 한다)는 본 계약과 별도로 “갑”이 제공하는 “외화편뱅킹서비스 신청서”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.)에 따라 지정한다.
- ③ “을”은 “신청서”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“갑”에게 “신청서”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### 제 3조 (수수료 등)

“갑”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“을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수수료는 “갑”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월중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없이 익월 10일(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“갑”이 “을”의 “수수료 인출 계좌”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한다
- ③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 상실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“을”의 “수수료인출계좌”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한다.
- ④ 서비스 수수료가 연체된 경우 서비스가 정지되며,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.
- ⑤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“갑”은 시행일 1개월전까지 “을”에게 서면 통보하며, “을”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, 동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“갑”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.

- ⑥ “신청서”의 수수료는 외화편뱅킹 서비스 이용 수수료이며, 이와는 별도로 은행외환업무관련수료는 “갑”이 해당 업무의 약관 등에서 정하는 외환관련 수수료에 따른다.(예 외화송금수수료, KEB이체수수료, 환가료, 대체료, 전신료 등)

## 제 2 장 외화계좌간 지급이체

### 제 4조 (업무의 처리)

- ① “을”이 “출금계좌”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외화계좌이체를 의뢰하는 시간은 “갑”의 영업시간 내에 이체의뢰 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“갑”에게 전송한다.
- ② 제 ①항에 의하여 수신한 이체의뢰 명세가 쌍방이 정한 데이터의 송.수신 절차에 부합되게 수신 되었을 경우 “갑”은 이를 “을”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“을”이 지정하는 외화계좌로 이체하고 그 결과를 처리 즉시 “을”에게 전송한다.
- ③ “갑”은 “을”로 부터 통장, 증서,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이체 의뢰금액을 “출금계좌”로부터 인출하기로 한다.
- ④ 이체대상 계좌의 종류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허용된 계좌에 한 한다.

### 제 5조 (변경, 수정, 취소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제 4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명세를 변경,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.

## 제 3 장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및 해지

### 제 6조 (업무의 처리)

- ① “을”이 “출금계좌”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외화정기예금의 신규개설을 의뢰할 때에는 “갑”의 영업시간 내에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“갑”에게 전송한다.
- ② 제 ①항에 의하여 수신한 신규개설 의뢰명세가 쌍방이 따로 정한 데이터의 송.수신 절차에 부합되게 수신되었을 경우 “갑”은 이를 “을”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정기예금의 신규개설 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외화정기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“을”에게 전송한다.
- ③ “갑”은 “을”로부터 통장, 증서,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신규개설 의뢰 금액을 “출금계좌”로부터 인출하기로 한다.
- ④ “갑”은 제 ②항에 의해 신규 개설된 외화정기예금을 만기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“을”로부터 통장, 증서, 해지신청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해지 신청절차 없이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“을”의 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“을”에게 전송한다.
- ⑤ 제 ①항의 외화정기예금 신규개설 의뢰시간은 “갑”의 영업시간내로 한다.

### 제 7조 (변경, 수정, 취소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제 6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변경,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.

## 제 4 장 외화송금 서비스

### 제 8조 (업무의 처리)

- ① 외화송금(국내이체 포함)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외화송금 신청명세 및 처리결과외의 전송은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로부터 통장, 증서,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“을”의 송금신청의뢰에 따라 송금의뢰금액을 “출금계좌”로부터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한다. 다만, “갑”과 “을”이 송금의뢰대전자급결제방법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“을”은 본 서비스 이 외에 “갑”의 영업점 창구를 통한 직접결제 또는 “갑”(“갑”의 영업점 포함) 명의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결제할 수 있다.
- ③ “을”이 외화송금을 신청하고자 “갑”의 영업시간 내에 외화송금 신청명세를 상호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“갑”에게 전송한 경우 그 전송내용은 “을”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송금신청으로 간주되며, “갑”은 “을”의 지시에 따라 “출금계좌”에서 송금대금을 인출하여 “을”이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하고 처리결과를 송금일 익영업일까지 “을”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 ③항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로는 외화송금의 취소 또는 대금의 변경을 할 수 없다.

### 제 9조 (변경, 수정, 취소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제 8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리명세를 변경,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.

## 제 5 장 외화금융정보전송 서비스

### 제 10조 (업무의 처리)

- ① 입출금 거래명세 전송서비스  
“을”이 지정한 계좌의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실시간 전송한다.
- ② 외화예금 잔액조회 서비스  
“갑”은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“출금계좌”의 외화예금 잔액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.
- ③ 고시외환환율정보 조회 서비스  
“갑”은 “을”의 요청으로 외국통화에 대한 1회차 또는 추가 고시된 환율을 “을”에게 전송한다
- ④ 외화송금 도착통지 서비스  
“갑”은 “을”의 계좌로 외화송금이 도착할 경우 등 내역을 “을”에게 전송 한다.
- ⑤ 수취계좌성명조회 서비스  
“갑”은 “을”이 특정계좌에 대한 당행거래계좌 여부 및 성명 조회에 대한 확인 요청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송한다.

### 제 11조 (전송시간)

“을”이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“갑”의 영업시간 내로 하며 “갑”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공통 사항

### 제 12조 (업무처리의 순서)

같은 날에 외화계좌 이체 및 외화정기예금 신규개설, 외화송금 등의 신청건이 여러 건이 있을 때의 업무처리 순서는 “갑”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 13조 (업무처리의 예외)

“갑”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“갑”의 관련내규 및 거래 약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.

- ① “출금계좌”의 인출 가능 금액이 신청한 이체 및 송금 금액보다 적을 때
- ② 대상계좌가 없거나 해지 혹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
- ③ 출금계좌 및 수수료 인출계좌나 대상계좌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
- ④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으로 기준일자 예금잔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을 때

### 제 14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,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“을”은 처리결과를 당일 중 확인하여야 하며, 당일 중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“을”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“갑”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 (단, 외화송금의 경우에 한하여 “을”은 송금내역을 송금신청일 익영업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, 송금신청 익영업일까지 “을”이 “갑”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).

### 제 15조 (전산운영)

- ①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의 송수신절차, 방법, 시간 등의 전산운영 세부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간에 송.수신되는 전산자료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복기부호를 사용하기로 한다.
- ③ “을”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, 이체에 사용되는 복기부호 등 본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“을”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 16조 (기밀유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 17조 (면책)

“갑”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.

**제 18조 (협의)**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 19조 (적용법규)**

- ①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“갑”의 관련내규 및 수신거래기본약관, 외환거래기본약관,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이 적용된다.
-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이 적용된다.

**제 20조 (계약기간)**

본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만료일은 계약 당해 년도 말로 정한다.

**제 21조 (변경)**

“갑”과 “을”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 22조 (해지 및 연장)**

-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 ①항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**제 23조 (관할법원)**

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 24조 (특약사항)**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(갑)

(을)

주식회사 하나은행

(인)

기업명:

(법인인감)

주 소:

# 외화편뱅킹 서비스 이용 □ 신규 □ 변경 □ 해지 신청서

## 1. 신청기업 정보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법인명<br>(또는 상호명) |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|  |
| 대표이사(대표자명)      |          | 법인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 |  |
| 업 태             |          | 종 목            |  |
| 사업장 주소          | (우편번호: ) |                |  |

## 2. 신청내용

| 신청여부  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 종류             | 계 좌 번 호 | 예금주명 | 수 수 료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당행외화계좌이체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이체건당 600 원/건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실시간국내이체(KEB)       |         |      | 이체건당 1,000 원/건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실시간해외송금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이체건당 1,000 원/건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실시간거래명세통지          |         |      | 전송건당 500 원/건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외화예금<br>신규개설/해지 통지 |         |      | 전송건당 500 원/건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고시환율정보 조회          |         |      | 조회건당 1,000 원/건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실시간 계좌잔액 조회        |         |      | 조회건당 500 원/건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외화송금도착 통지          |         |      | 전송건당 1,000 원/건 |

※ 서비스 종류는 업무 확장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.

## 3. 수수료인출계좌 정보

| 계 좌 번 호 | 예금주명 | 거래 인감 |
|---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 |      |       |

## 4. 담당자 정보

|             |  |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|
| 자금담당부서      |  | 담당자명      |  |
| 담당자전화번호     |  | 담당자휴대전화번호 |  |
| 팩스번호        |  | 담당자 이메일   |  |
| 전산담당자명      |  | 전산담당자전화번호 |  |
| 전산담당자휴대전화번호 |  | 전산담당자 이메일 |  |

## 5. 기타

|    |  |
|----|--|
| 기타 |  |
|----|--|

위와 같이 편뱅킹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 :

(법인인감)

**참고1) 첨부서류**

- (1) 대표자 내점시
  - (a) 법인등기부등본
  - (b) 사업자등록증
  - (c) 법인인감증명서
  - (d) 모계좌 통장사본
  - (e) 대표자의 실명증표
  - (f) 펴뱅크서비스 계약서 및 신청서
- (2) 대리인(임원 또는 직원에 한함) 내점시
  - (a) 법인등기부등본
  - (b) 사업자등록증
  - (c) 법인인감증명서
  - (d) 모계좌 통장사본
  - (e) 위임장
  - (f) 대리인의 실명증표
  - (g) 펴뱅크서비스 계약서 및 신청서
- (3) 공동대표인 경우
  - ① 법인사업자 :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.
  - ②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 (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징구).
- (4) 위의 기본서류 외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*참고2) 수수료 확인 방법**

- [www.hanacbs.com](http://www.hanacbs.com) > 기업서비스 > 자금관리 > 펴뱅크 > 수수료조회 > 사업자번호 및 인출계좌 입력